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성과급 제도는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여 지속적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함에 따라 장기 성과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3개년 이상 연속하여 성과급평가 최상위등급(S등급)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‘장기성과급’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6. 30. ~ 8. 9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특별성과가산금”을 “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본문 중 “제8항”을 “제9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1항) 중 “제10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한다.

⑦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평가 결과 3년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별표 3의 제목 “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 (제7조의2제7항 관련)”을 “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 (제7조의2제8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성과상여금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의2(성과상여금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평가 결과 3년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.
⑦ 제6항에 따른 <u>특별성과가산</u> 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.	⑧ ----- <u>특별성과가산</u> 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----
⑧ (생략)	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
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.	⑩ ----- -- 제9항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⑩ (생략)	⑪ (현행 제10항과 같음)
⑪ 제10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	⑫ 제11항-----

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장이 정한다. ⑫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⑬ (현행 제12항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06